생활 속 법률이야기

구글서비스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현황을 요청 시 구글은 공개해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구글서비스이용자인 원고들이 구글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국가안보국 등 제3자에게 제공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구글은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 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제공을 제한하거 나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로 열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외국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 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그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현황 등에 관한 열람·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보장되는 이용자의 열람·제공 요구권도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될수 있고,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등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한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 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 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 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 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 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 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 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 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 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 다』라고 판시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 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 공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에 대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 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 결)라고 판시하였다.

결 론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 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특히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이 미 종료되는 등으로 위 정보수집의 목적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용자에게 해당 정 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